

#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 
번호

2126

제출년월일 : 2011. 5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□ 개정이유

-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「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」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 □□ 주요내용

- 공무원 여비규정 및 표준안에 따라 국내여비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않고 국외 숙박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제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조문 개정 (안 제4조제1호)
- 제17조 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없는 것으로 관련조문을 개정 (안 제4조제7호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정비

□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□□ 관계규정발췌서 : 붙임

□□ 예산수반사항 : 없음

## □□ 사전예고

- 부서 의견조회(결과) : 의견없음
- 입법예고 : 생략 (「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3호)

## □□ 기타 참고사항

- 경기도 관련 공문

#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제3조제2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하며, 제3조의2 중 “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제8조의2는”을 “제8조의2 중 국내 여비(운임과 숙박비)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”를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6호 중 “따라 쓰지 아니한다”를 “준용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제29조제1항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회계과
임 안 자	실·과장	회계과장
	직위·성명	최종세
	담당·팀장	경리계장
	직위·성명	이범열
	담당자	이미령
	성명·전화	(행정 3071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 현

## 행

## 개정안

3.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협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.

4. ~ 5. (생략)

6. 제27조의 규정을 따라 쓰지 아니한다.

7. 제29조 제1항 중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의견 청취 절차는 없는 것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은 따라 쓰지 아니한다.

8. (생략)

3. -----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준용하지 아니한다.

7. 제29조 제1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8. (현행과 같음)